

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및 발의경과

- 의안번호 : 2098
- 발 의 자 : 서윤기의원외 12명
- 발 의 일 : 2017년 9월 7일
- 회 부 일 : 2017년 9월 19일

2. 제안이유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이를 반영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,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으며,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본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(안제6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 (2017. 9. 22. ~ 9. 29.) 결과 : 의견 없음.

5. 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 위원회 위촉위원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(안 제 6조제2항)하여 「양성평등 기본법¹⁾」의 근본 취지를 반영하고, 위원회의 위원 구성시에도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위원회의 주민참여)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여성, 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 이때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%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하며,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한다.	제6조(위원회의 주민참여) ② _____ _____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,... (중략).
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1) [양성평등기본법]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**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**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(이하 이 조에서 "관리직 목표제"라 한다)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.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,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○ 안 제6조제2항은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60%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, 위촉직 위원의 구성시에도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※ 여성가족부는 '18년에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(미달성사유 심의·의결), 제3항(참여현황 제출) 개정 및 부진위원회 권고사항 언론공표, 이행점검 결과 국무회의 상정, 정부합동평가 가점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임.

○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르면, “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” 규정하고 있으며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를 예외 사유로 두고 있는바, 예외규정과 관련한 보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※ 서울시에는 189개의 위원회(2017년 7월 기준)가 있으며, 전년 대비 4개 위원회가 증가하였고, 2012년 이후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.

〈위원회 현황〉

(단위 : 개)

구 분	'09년말	'10년말	'11년말	'12년말	'13년말	'14년말	'15년말	'16년말	'17년 기준
위원회수	116	113	103	127	136	148	152	185	189
증 감	△6	△3	△10	24	9	12	4	33	4

※ 2017년 7월 기준으로 전체 위원회(189개)의 위촉위원은 총 3,688명 중 남성이 2,199명(59.6%), 여성이 1,489명(40.4%)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나, 개별 위원회별로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, 전체 189개 위원회 대비 70개 위원회(37%, 2017년7월 기준)는 특정성별(여성, 40%)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.

〈위원회 구성〉

(단위 :개, 명, %)

연도	위원회 수	총 계	당연·임명직	위촉직 위원			비고
				소계	남성	여성	
2017년 7월	189	4,270	582	3,688	2,199	1,489	* 여성비율 40%

연도	총 계	당연· 임명직	위 촉 직								위 촉 직	
			소 계	학 계	전문가	민간기업	시민 사회단체	시의원	공공기관 (중앙부처 등)	기 타 (일반시민 등)	여성	장애인
2016	3,911	536	3,375	834	1,033	209	399	216	282	402	1,302	52
			(100%)	(24.7%)	(30.6%)	(6.2%)	(11.8%)	(6.4%)	(8.4%)	(11.9%)	(38.6%)	(1.5%)
2015	3,661	467	3,194	879	687	308	372	185	284	479	1,204	47
			(100%)	(27.5%)	(21.5%)	(9.6%)	(11.6%)	(5.8%)	(8.9%)	(15.0%)	(37.7%)	(1.5%)

○ 또한, 서울시 조례상 위원회 ‘성별 비율 준수’ 규정상 “표현형식”이 제각각 다른방식으로 규정되어 입법체계성과 통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표준안 마련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〈 규정 표시 유형 〉

- ① 특정성별 10분의 6 초과 불가 :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(예정) 등
- ② 특정성별 60퍼센트 초과 불가 :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
- ③ 특정성별 60% 초과 불가 :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

전 문 위 원	김 태 한	입법조사관	김 정 덕
--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

참고

주민참여연구회 위원명단(15명)

연번	성명	성별	위촉기간 (2년)	비고
1	류00	남	당연직	관계 공무원
2	김00	남		
3	김00	남	'16.10.20~ '18.10.19	지방의회의원 (신규)
4	김00	남		1기 연임 (주민참여 전문가)
5	이00	남		
6	김00	남		1기 연임 (공개모집)
7	허00	남		
8	송00	여		
9	정00	여		'16.10.20~ '18.10.19
10	진00	남		
11	최00	남		
12	배00	남	2기 신규 (공개모집)	
13	박00	남		
14	권00	여		
15	송00	남		

※ 주민참여연구회 위원(15명)중 남성위원은 12명, 여성위원은 3명으로 구성됨.